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6. 9 선고 2020가단8696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이정진

변 론 종 결 2021. 5. 12.

판 결 선 고 2021. 6.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20. 7. 27.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8. 28. 접수 제994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소13012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7. 14. 위 서부지원으로부터 'D은 원고에게 4,39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17. 6.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D의 아버지인 E 소유였는데, E(다음부터 '망인'이라 한다)은 2020. 7. 27. 사망하였다. 그 후 2020. 8. 28. 위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D은 망인의 사망 후 대구가정법원 2020느단1710호로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20. 11. 13.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라. D의 당초 상속지분은 2/7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D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자신의 상속지분(2/7)을 포기 또는 양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이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3. 판 단

가.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속의 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비록 상속인인 채무자가 무자력상태에 있다고 하여서 그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를 쉽사리 인정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던 모든 재산적 권리 및 의무·부담을 포함하는 총체재산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서 다수의 관련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위와 같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좌우하는 상속포기의 의사표시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 자신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적용이 있다고 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그 법적 처리의 출발점이 되는 상속인 확정 단계에서부터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상속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속의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D은 상속포기기간 내인 2020. 9. 4.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상속포기신고서를 제출하였고 대구가정법원은 2020. 11. 13. 위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D의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 중 D의 지분인 2/7이 피고에게 귀속된 것은 상속포기로 정당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원고는 D이 상속포기의 신고 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였으므로, D은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되고,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여전히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1026조의 입법 취지가 상속재산 처분을 행하는 상속인은 통상 상속을 단순승인하는 의사를 가진다고 추인할 수 있는 점, 그 처분 후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허용하면 상속채권자나 공동 내지 차순위 상속인에게 불의의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상속인의 처분행위를 믿은 제3자의 신뢰도 보호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 있음을 고려하여 볼 때, 상속재산분할협약에 참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약의 당사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협약이 상속포기를 전제로 하여 상속포기자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그것이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정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위 2011다29307 판결, 대법원 2012. 4. 16.자 2011스191, 192 결정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D이 상속포기신고를 하기 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은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내용이 아니라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이를 망인의 다른 상속인인 피고에게 전부 이전하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설령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 및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D의 상속포기신고 전에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정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차윤제

별지

목 록

1. 대구광역시 서구 대 264.5㎡2. 대구광역시 서구 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서구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점포 및 주택

1층 점포 67.83㎡

외 2층 세멘벽돌조 슬래브지붕

주택 126.61㎡

외 3층 세멘벽돌조 슬래브지붕

주택 36.89㎡